

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

① 정책사업명	「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」 개정안 입법 추진		
② 추진배경	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되어 2020년 6월 11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사결과 통보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2020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		
③ 사업개요	< 주요내용 > ○ 국민신문고에 신청된 민원의 접수기관 판단기준 정비 ○ 위원회 의결사항 정비 ○ 권고 또는 의견표명시 의견제출 방식 확대 ○ 조사결과 통보 관련 규정 정비 ○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○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		
④ 사업부서	혁신행정담당관실	⑤ 담당자	부서장 : 김남두(3급) 담당자 : 이하운(6급)
⑥ 선정기준	법령 개정사항	⑦ 사업기간	2019. 12 ~ 2020. 6.
〈그간 주요 추진내용〉			
○ 입법예고		'20.1.28. ~'20.3.9.	김남두 과장 이하운 주무관 이진석 과장 송영희 서기관 장차철 과장 노성래 사무관 박혜경 과장 전인혜 사무관 임진홍 과장 강우성 사무관 정재일 과장 추수진 서기관